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54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의 법적 재검토기한 도래(' 24.3.11) 및 공정위 권고사항(「전자상거래법」 개정 반영) 등 반영한 지침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정보 고지의무)** 결제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의 정보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제7조 제2항 제9호 개정)
 - 과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금 5만원 이하의 거래'를 고지대상의 예외로 규정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 개정(' 13.05.28.)으로 해당 규정 삭제
 - 이에 동지침 역시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부합하도록 고지대상 예외 삭제
- **(지연이자율)** 사업자가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현행 연 12%에서 연 15%로 수정(제12조 제3항 개정)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은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에 관해 「전자상거래법」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의3은 지연이자율을 연 1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 필요
- **(전속관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계약에 관한 소의 전속관할 규정 삭제(제22조 제2항 삭제)
 - 현행 규정은 전속관할을 '○○○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오인 초래 및 보호 저해 우려
 - 제22조 제1항은 이용자의 주소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kjkim7089@korea.kr
- 팩스: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전화 044-203-2582/2586,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